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43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권향엽·김종민·안태준

정동영 · 장종태 · 용혜인

김 윤・김문수・임광현

박지원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컨설팅,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 략)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			
대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제1호부터</u>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우대할		
	<u>수 있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